신규임용후보자 임용절차 FAQ

※ 아래는 문의가 잦은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Q. 합격자입니다. 앞으로의 대략적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?

A. 먼저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▶ **10.8.(화)~10.18.(금)까지 채용후보자 등록**(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참고)
→ 채용신체검사서 등 임용관계서류를 채용후보자로부터 제출받아 결격사유 등 조회 → 이상 없으면 관할우체국으로 임용추천 → 임용

▶ 구체적인 임용 시기는 채용후보자 등록 순번 및 결위발생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음

Q. 2024년도 우정9급(계리) 공무원 공채시험 최종합격자가 우선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?

A. 우정인재개발원에서 안내하는 기간(**10.8.(화)~10.18.(금)**까지)에 해당 지방우정청으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. 이때 임용포기의사가 있는 분은 **임용포기서 작성을,** 임용유예 신청을 하실 분은 **임용유예 신청서**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임용유예 신청은 채용후보자등록을 먼저 하여야 가능합니다.

제출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서류명	매수	비 고
① **채용후보자 등록원서**	1부	사진(3.5㎝×4.5㎝) 2매 (등록원서 부착 1매, 별도 제출 1매)
② **기본증명서**(상세)	2부	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상세증명서로 제출
③ **가족관계증명서**(상세)	1부	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상세증명서로 제출
④ **주민등록초본**	1부	병역사항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 발급(전체) ※ 제1국민역과 실역미필 보충역 해당자는 병적증명서 별도제출
⑤ **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**	1부	전국 가정법원 및 온라인 발급 가능
⑥ **최종학력증명서**	1부	졸업증서 사본 또는 검정고시합격증 사본도 가능
⑦ **경력증명서**	1부	공무원경력 또는 국·공영기업체 근무경력 등
⑧ **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**	1부	해당자 한
⑨ **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**	1부	해당자 한
⑩ **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**	1부	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서 ※ 사진(3.5㎝×4.5㎝) 1매 부착
※ **전문의 소견서 및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**	**각 1부**	채용 신체검사 결과 「판정 보류」를 받은 채용후보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
⑪ **통장사본**	1부	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통장
⑫ **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**	1부	

Q. 채용후보자 등록을 할 때, 《경력》에는 무슨 일까지 써야 합니까?

A. 공무원 재직경력이나 국공영/민간 기업체 근무경력, 일반사회경력 등으로써 배치 후 인사에 참고가 될 만한 경력을 쓰시면 됩니다.

* 특정경력자에 대한 특별추천 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.

Q.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어서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.

A. 채용후보자 등록 시 주소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 수시연락을 위한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변경사항은 채용후보자등록원서 작성 시 변경기재하면 됩니다.

Q. 개명, 오기 등으로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의 주민번호, 이름 등이 다릅니다.

A. **<붙임4>『각종서식 묶음』** 중 **인적사항 변경 신청서**를 작성하여 **증빙서류**와 함께 해당 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(제주청 사업지원과)로 변경신청 합니다.

※ 증빙서류
- **개명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에서 개명을 인정한 경우 : 판결문 사본**
- **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표상의 성명(한글, 한자)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: 정정결과 등**

Q. 임용(추천)유예신청을 하고자 합니다.

A.
- 임용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**<붙임4>『각종서식 묶음』** 중 **임용유예 신청서**를 작성하여 증빙자료(재학 또는 휴학증명서, 병원발급 진단서, 군복무 확인서, 입대예정서 등)와 함께 해당 지방우정청에 제출합니다.

※ 임용유예의 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(2년)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※ 임용권자가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*** 임용유예 사유 :** 학업의 계속(재학 중인 대학교 졸업까지), 군복무, 6개월 이상 질병, 임신·출산, 그 밖에 유예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**임용 유예**가 필요한 경우

Q.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내년에 대학(원)에 진학하려 합니다. 임용(추천)유예가 가능한지요?

A.
- 임용유예란 합격자가 학업, 질병치료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받기가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임용을 늦추어 주는 제도입니다.
- 따라서 시험합격 후 새롭게 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, 제도의 취지상 대학원 재학은 임용추천 및 임용유예 사유로 승인하지 않습니다. 또한 임용유예를 신청한다하여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, 해당기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

< 임용유예 관련 주요 질의답변 사례 >

Q.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허가 받았는데 이 기간 중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휴학을 할 수 있는지?

A. 임용유예기간은 유예사유를 해소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. 어학연수나 휴학 등으로 인해 허용된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하였다 해도 다시 임용유예를 연장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.

Q.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휴학한 후 시험에 합격하였는데,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임용 유예를 3년간 할 수 있는지?

A.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. 따라서 위 경우는 2년의 기간 내에 학업도 마치고 임용도 받아야 합니다.

Q. 대학 3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. 내년에 군입대도 해야 하고, 제대 후 복학해서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?

A. 가능합니다.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간은 이 유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 따라서 이 경우는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2년간의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보장받으므로 제대한 후 학업을 위해 1년간 임용(추천)유예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